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91

발의연월일 : 2020. 10. 13.

발 의 자:김성원·김정재·이 영

성일종 · 임이자 · 최승재

윤창현 · 엄태영 · 권명호

지성호 • 이명수 • 이종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처리된 자동차'는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가 전손차량 유통업체 및 중고차매매업자에 의해 경미한 사고로 위장한 중고차로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증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잔존가액을 피보험자에 지급하고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26조의2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를 "자동차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조제13호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6조의2"로 한다.

제81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6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	13
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	
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	
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	
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	<u>자동차를 말한다</u> .
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보	
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u>말한다</u> .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u><삭 제></u>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u><삭 제></u>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	<u><</u> 삭 제>
하기로 분류한 경우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전등록) ① ~ ⑤ (생	제12조(이전등록) ① ~ ⑤ (현

략)

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 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 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 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 (受理)하여야 한다.

⑦ (생략)

<신 설>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 저 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 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 4. (생 략)
-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

 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

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조제13 호에 따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리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 자는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 야 한다.

세43조(자동차검사)	①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 ⑥ (생 략)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7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 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 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 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 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 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 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 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 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 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 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 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 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 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u>제26조, 제26조의2</u>
,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 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9. ~ 28. (생략)

제81조(벌칙)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26조의2(제5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u>아니한 자</u>

9. ~ 28. (현행과 같음)